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성찬용

전화 031-880-4304 / 팩스 031-880-4570

보도자료

2020. 7. 20.(월)

제 목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건 중간수사 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**금일(7. 20.)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시청(지청장 송경호)은 '20. 4. 29. 13:35경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소재 ㄱ社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자 38명을 사망하게 하고,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,**
 - 냉동냉장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의 배관 용접작업이 우레탄폼이 도포된 천장과 근거리에서 이뤄지던 중 우레탄폼이 연소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실,
 - 위 화재가 냉동냉장설비 하청업체, 시공사, 감리 등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, 방호조치 미실시, 화재감시자 미배치,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에 기인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,
 - 주요원인을 제공한 하청업체, 시공사, 감리 등 피고인 8명을 구속 기소하고, 발주자 피고인 1명 및 시공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책임자들에게 각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 등이 계속 수사 중이므로 모든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수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

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● 피고인(관련자 9명, 시공사 1개 업체 등 총 10명)

- A○○(50세, 발주자 ㄱ社 TF팀장)
- B○○(58세, 감리 ㄴ社 감리단장)
- C○○(63세, 감리 ㄴ社 기계설비분야 감리)
- D○○(46세, 시공사 ㄷ社 현장소장)
- E○○(54세, 시공사 ㄷ社 기계설비부장)
- F○○(51세, 시공사 ㄷ社 안전관리부장)
- G○○(47세, 하청업체 ㄹ社 현장소장)
- H○○(51세, 재하청업체 ㅁ社 대표·사업주)
- I○○(53세, 재하청업체 ㅁ社 용접작업보조자)
- 주식회사 ㄷ社(시공사)

● 공소사실 요지

- (A○○·B○○·C○○·D○○·E○○·F○○·G○○·H○○·I○○) '20. 4. 29. 13:35경 이천시 ㄱ社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발생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 38명을 사망하게 하고, 10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**【업무상과실치사상】**
- (D○○·H○○·주식회사 ㄷ社) '20. 4. 29.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자 38명을 사망하게 하여 **【산업안전보건법위반】**
- (H○○) '20. 1. 28. 국토교통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냉동기 설치 및 배관연결 공사를 하도급 받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, '20. 3. 31. 유닛쿨러에 제상수배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재하도급 하여 **【건설산업기본법위반】**

2 수사 경과

- '20. 4. 29. 화재사건 발생, 수사본부(수원지검) 및 수사팀(여주지청) 구성
- '20. 5.~ 6. (경찰·노동청 등) 합동감식, 피의자, 참고인 조사, 압수수색 등
- '20. 6. 24. 주요피의자 8명 구속
- '20. 7. 2. 구속피의자 8명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사건 분리송치(경찰)
※ 같은 날 노동청은 D○○·H○○·주식회사 ㄷ社에 대한 사건 송치
- '20. 7. 20. 피의자 8명 구속 기소, 피의자 1명 및 시공사 불구속 기소

3 수사 결과

- (화재원인) 물류창고 B동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3번 유니트쿨러에 배관을 연결하면서 천장에 발포된 우레탄폼과 근거리에서 산소용접 작업을 하여 우레탄폼이 연소됨
- (하청업체, 시공사, 감리, 발주자 등 과실 확인) 수사결과, 물류창고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사전작업계획 미수립, 방호조치 미실시, 화재감시자 미배치, 임시소방시설 미설치,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결정 등의 과실이 확인되었고,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과 본 건 화재발생 및 사상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

4 향후 계획

- 본 건 화재는 물류창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온 중층 하도급 관계 및 무리한 공기단축요구, 공사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 등이 결합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인재(人災)로서,
-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지방자치단체,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점검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
-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사건이 계속 수사 중이므로, 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등을 통해 완결성 있는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☑